

이현숙(한국 여성의 전화 지도위원)

유엔은 1994년을 "가정의 해"(IYF, International Year of Family)로 선포하였다. 그 주제는 "가정:변화하는 세계 속에서의 책임과 자원(Family:resources and responsibilities in a changing world)"로 설정하고 그 모토는 "사회 한가운데 가장 작은 민주주의를 건설하기 위하여(building the smallest democracy at the heart of society)"로 내걸고 있다. 유엔은 지난 50년간 세계 평화와 안전 그리고 사회발전과 개인의 자유롭고 인간다운 삶을 증진시키기 위해 국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70년대와 80년대에는 오랫동안 소외되고 차별받고 빼앗긴 이들의 안녕과 기본권리와 몫을 돌려주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회발전과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주장, 이를 위한 국제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국가적인 정책을 제시, 각 정부의 정책 이행을 촉구해 왔다.

1980년대 이후에는 유엔 총회, 사회경제협력회의(the Economic and Social Council)와 사회개발위원회의(the Commission for Social Development)가 가족에 관한 문제들을 꾸준히 검토해왔는데 그 결과 사회 진보와 노력과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이런 결론에 따라 1989년 12월 8일 유엔 총회는 만장일치로 1994년을 '세계 가정의 해'로 선포하였다.

유엔이 가정문제를 올해의 중심 과제로 부각시킨 데는 지난 20년간 다뤄진 반면 '가정'이란 주제는 여성, 어린이, 노인, 청년, 장애인 등의 문제를 포함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동시에 종합적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는 고려가 크게 작용하였다.

가정이야말로 사회의 최하위 단위로서 한 사회의 발달과 복지환경의 정도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평화와 안녕 그리고 민주적 수준이 그 사회의 발전의 정도와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가정을 통해 사회발전과 진보를 추진한다면 이전에 다뤄 온 문제들을 포괄하기 때문에 그만큼 총체적 접근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최근의 급격한 사회변화는 가족의 형태와 기능과 역할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으나 각국의 가족정책이나 법적제도는 대부분 전통적인 가정이해와 가족정책에 머물러 있어 변화된 가정과 가족성원들의 요구를 지원하는데 실패하고 있다는 현실적 판단도 크게 작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변화와 위기적 상황(사회문화적 변화, 경기후퇴, 전쟁, 기아, 실업, 이민, 기술혁신, 산업화와 도시화, 남녀평등 요구, 여성의 기회확대, 개인주의, 자기실현, 자율성,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집단 가치의 변화 등)에 놓여 있어 가정이 붕괴되지 않고 변화와 위기에 생산적으로 대처,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새롭게 파악하는 새로운 관점의 확장과 새로운 정책적 지원이 크게 요구된다는 상황인식도 짙게 깔려 있다.

가정내에서 벌어지는 차별적, 폭력적 상황(성인의 이기심, 아동학대, 가족성원간의 불평등, 여성학대와 착위 등)에 대한 지대한 우려와 관심도 '가정의 해' 선포의 주요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제정된 '가정의 해'는 가정이 처한 복잡한 상황에 따라 구체적 행동 강력과 프로그램을 분야별, 대상별 그리고 권고사항들로 나뉘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가정의 해'가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원칙들(principles)도 제시하고 있다. 그중

한국의 상황과 관련하여 주목을 끄는 것은 1) 다양한 가족형태와 기능을 수용할 것 2) 가정의 형태와 조건이 어떠하든지 또는 가정에서의 개인의 지위가 어떠하든지간에 개인의 기본권리와

자유를 증진시킬 것 3) 가정 안에서 남녀의 평등을 육성하고 가사책임과 고용기회를 남녀가 공유하도록 할 것 등의 원칙들이다.

오늘날 가정은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중의 하나는 이혼이 증가하면서 공식화된 결혼의 의미가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추정하기로는 모든 가정의 3분의 1이 여성이 가장인

편부모 가정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확대가족과 핵가족에 기반을 둔 전통적인 가족 개념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으며 그 대신 새로운 가족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는 추세라는 것이다.

핵가족과 동거가족, 독신부모가정, 다처가정, 여성가구주세대, 다세대가족, 친족가족,

동호인가족, 부족가족(tribal families), 재혼동거가족 등이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새로운 형태의 가족들은 가족의 가치를 해치기보다는 오히려 현대사회의 도전

에

더 잘 직면하기 위해 발전하고 있으며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책임 사이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가정의 해'는 정부와

정책결정자들이 다양한 가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가족정책을 펴나갈 것을 강조하

고 있다. 이런 주장은 핵가족과 확대가족 이외의 가족형태들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아 온 우리

에게는 전혀 새로운 관점을 요구하는 사항이다.

가정내에서 개인의 권리와 자유와 안녕을 신장시키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을 평등하고

민주적이며 동반자적인 가족관계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원칙 또한 한국 가정이 경청

해야 할 대목이다. 역사적으로 가정은 압주장의 지배와 여성과 아동의 예속이 일상화되었던

온상이었다. 통상적으로 한국 가정도 위계적 가부장질서를 선호해 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정은 남성의 절대특권과 협박, 가제, 위협, 경제적 학대, 고립과 여러 형태의 정서적 학대,

그리고 아동학대, 아동노동이 은밀히 빈발하는 장소로 전락하거나 그럴 가능성 속에서 있

다.

위계적 유교윤리가 아직 살아 숨쉬고, 가정내 부부갈등, 아내구타, 근친강간, 아동학대의 문

제가

사회로 불거져나올 만큼 심각하고 청소년 문제, 노인문제, 장애인 문제가 적지 않은 한국

현실에서 가족관계를 민주적이고 동반자적인 인간관계로 전환시켜야 한다는 '가정의 해' 원

칙은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가정의 해'는 가정 안에 동반자 정신 (partnership)이 터잡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 제안도

제시해 놓고 있는데 1)가사의무와 책임, 가사결정권을 가족성원이 공유할 것 2) 각 개인이

독자적인 느낌과 견해와 선택을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하고 가족성원간에 존경과 신뢰와

정서적 지원을 쌓아나갈 것 3)가족성원은 위협적 행위를 삼갈 것 4)갈등해결을 위한 타협과

협상능력을 키울 것 5)가정내 아버지의 역할을 다원화할 것 등이다.

오늘 한국 사회는 '민주사회 건설'이란 염원 아래 모든 분야의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이

런

시점에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가정의 민주화, 평등화, 복지화의 추진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사회 한복판에 가장 작은 민주주의를 건설하자"고 외치는 '가정의 해'의 운동 목표는 한국 사회가 가장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목표다. 사회의민주화는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의 민주화에서

비롯된다는 새롭지 않은 주장이 우리 사회와 정부와 교회의 상식으로 자리잡고 현실로 가시화될

때 한국 사회의 민주화는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영자(성심여대, 사회학 교수)

차 례

1. 아내구타는 사생활 문제인가 사회문제인가 ?
2. 아내구타현상에 내포된 사회구조적 모순과 사회문제
 - 1) 권위주의적 가족구조/인권침해와 가정파괴의 사회범죄
 - 2) 남성문화와 폭력문화/폭력의 사회화, 대물림, 확대재생산
 - 3) 폭력조장 사회환경과 매체산업
3.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통상의 시급성

1. 아내구타는 사생활 문제인가 사회문제인가 ?

특정한 사회현상이 사회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사회적 차원에서 어느 정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문제 상황이 존재하고 동시에 그러한 객관적 상황을 문제로 인지하게 하는 가치판단이 있기 때문이다. 즉 사회문제에 대한 정의는 객관적 상황뿐 아니라 가치판단에

의한 선택의 문제를 내포하며, 또한 그 선택의 원리와 불가피하게 맞물려 있는 권력관계의 논리를 포함하고 있다(고영복 편, [현대사회문제] 19쪽, 1993)

따라서 현재 우리 사회에서 어떤 것은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또 어떤 것은 사회문제로 취급되지

않는가를 보면서 우리 사회에 지배하는 가치판단과 권력관계의 논리를 헤아릴 수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 일례로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아내구타 현실을 사회문제로 취급해 오지 않는 배경과 그것을 내재하는 가치판단과 권력관계의 논리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사생활 보호'등을 들수 있다. 즉 국가와 사회는 가정의 사생활에 대해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는 통념과 함께 이를 지지하는 법과 제도가 존재한다. 가정내 형태들에 대해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 가정의 신성을 침해하는 반가족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가족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공적, 법적 감시로부터 면제시켜 온 명부일 뿐만 아니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으로 이원화시켜온 사회구조의 무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가정문제를 사회문제와 분리시켜 온 접근 방법은 바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공/사의 이분법적 모순에서 파생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가족은 사회의 기본단위로서 중요한 사회제도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가정의 일은 결코 한 개인의 일이 아니며 가정의 문제는 사회문제와 상호영향을 주고받는 밀접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가정문제는 결국 사회문제의 하나일 수 밖에 없다. 이를테면 청소년 가출이나 쓰레기 처리 문제가 가정문제이자 곧 사회문제인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내의 폭력문제 역시 사회문제의 하나인 것이다.

두번째로 우리 사회는 아내구타와 같이 주로 여성이 피해를 입는 문제를 여성만의 문제로 취급하여 일반 사회로부터 고립시키는 경향이 있다. 즉 여성의 현실을 일반 사회현실과는 별도로 주변적인 것으로 취급하고 일반 사회현실은 주로 남성의 현실을 대변하는 것으로 본다. 이와 같이 우리 사회 전체가 남성중심적인 것처럼, 사회문제를 진단하는 관점 역시 남성중심적이고 여성차별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남성중심적 관점이 바로 여성문제를 일반 사회문제와는 다른 범주의 지엽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위급하게 만든다. 이 때문에 여성들이 당장 피해를 입거나 잠재적인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객관적 상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회문제로 인정하진 않을 뿐 아

나라

그 상황의 심각성을 외면해 버리는 결과가 초래하는 것이다.

그런데 여성의 현실은 남성의 현실과 맞물려 있을 뿐 아니라 사회현실 중 절반의 비중을 차지한다.

여성문제는 곧 남성문제이며, 특히 여성이 가정에서 당면하는 문제들은 남성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다.

여성문제를 여성 개개인에게만 맡겨 버리고 남성이나 사회가 무시해 버리는 것은 결국 남성과 사회의

문제를 방치하는 것과도 같다.

게다가 아내구타의 문제는 극소수의 여성이 당하는 예외적인 문제가 아니라 본질적인 여성문제로서

남성과 사회 현실로부터 절대 고립시킬 수 없는 성격을 지닌다. 1992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여성 2명 중 1명이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으며, 그중 습관적으로 아내를 구타하는

경우는 9.1%를 차지한다고 한다.([가정 폭력의 실내와 대책에 관한 연구]), 1993년 정부 통계에서도

여성의 61%가 남편의 학대를 받고 있으며, 그중 40%가 물리적 폭력을 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진화>, [베틀] 78호, 16쪽, 1994), 이러한 자료들은 바로 아내구타를 본격적인 사회문제로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해 준다고 하겠다.

세번째로 우리 사회는 아내구타 현상을 폭력의 문제로 보지 않고 보통 '있을 수 있는 일'로 보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복어와 아내는 두들겨야 제맛이 난다."는 속담이 있듯이, 남편이 아내를 때리는

것이 아내를 다루는 예사로운 일로 인식되어 온 것이다. 즉 아내구타는 다른 폭력행사와는 달리

남편에게 허용된 특권처럼 취급되었고, 이 때문에 아내구타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는 무감자 증세가

사회에 면연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결국 부부관계가 남편에 대한 아내의 복종을 바탕으로 성립되어 온 역사적, 사회적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러한 현실을 정당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말하면 우리 사회가 아내구타를

묵인해 왔다는 사실은 결국 부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와 남편의 가부장 특권을 노골적으로 지지해

왔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생활 보호'론 역시 사실상은 가족내에서의 남성의 가부장권을 보호하는 명분임을 주지해야 한다.

이와 같이 아내구타를 사회문제로 삼지 않는 배경에는 여성 부당한 현실을 암묵적으로 정당화하는 가치판단과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 원리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아내구타 현상에 내포된 사회구조적 모순과 사회문제

아내구타를 사회문제로 제기해야 하는 필요성은 바로 아내구타 현상에 내포된 사회구조적 모순과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있다. 특히 세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1) 권위주의적 가족구조/인권침해와 가정파괴의 사회범죄

부부간의 폭력생사는 주로 남성의 성을 가진 남편이 여성의 성을 가진 아내를 때리는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역사적 사실에서 아내구타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성별문제를 내포한 가족구조의 모순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가부장제의 권위주의적 가족구조다. 앞에서 이미 지적했듯이

남녀간의 불평등한 권력관계를 토대로 한 가족은 남성권력 위주의 가 지배하는 구조로 정착되어 왔다.

남성은 여성 위에 군림하는 존재이고 따라서 여성의 인격은 결코 남성과 동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히 남편의 우월성을 보장하는 행위들이 정당화된다.

그러한 남편의 행위들은 아내의 인격을 무시하거나 아내를 소유물로 취급하는 사소한 언행에서부터

아내에게 직접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가해를 하는 난폭한 행동들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이 모든 것은 아내(여성)에 대한 남편(남성)의 통제력을 구사하는 것이자 동시에 그 통제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다. 특히 남성의 폭력행사는 수잔 브라운 밀러가 지적했듯이, 여성에 대한

남성통제의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아내구타는 이러한 연속선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남성가장의

절대적인 권위와 권력이 본격적인 물리적 폭력의 형태로 가시화되는 현상인 것이다.

실제로 아내구타의 사례들을 보면, 구타의 이유가 특별히 따로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편이

구타할 때 주로 핑계를 대는 것 중에 "남편에게 말대꾸한다." "남편을 간섭한다"라 "남편의 행동을 무시한다"가 65%를 차지하는데(<여성의 전화> [설문집계 보고서] 1994, 1~3월), 이런 것들은 바로 아내에게 남편과 가장으로서의 권의를 일방적으로 강요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아내의 입장에서 보면 남편이 기분에 따라 이유 없이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폭력행사를 통해 남편으로서의 권력을 확인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폭력적인 남편들은 어린 시절부터 자기만 알고 자란 탓으로 자기밖에 모르는 미숙아와 같다는 아내들의 지적도 있는데, 이는 극단적인 남성우월주의가 아내학대로 표출될 가능성이 많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이 아내구타는 분명 여성의 인권침해다. 물리적인 가해일 뿐 아니라 인격적인 학대이고 인격의 모독이며 자존감의 파괴다. <여성의 전화>에 상담을 받으러 온 여성들은 대개 구타당했을 때 '창피했고' '죽고 싶을 정도로 굴욕적인' 느낌이었음을 토로한다.

폭력을 '권력이나 힘의 부당한 사용으로 타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또 사회가 이러한 권리박탈로부터 개인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면, 가족내에서 구조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아내의 인권보호는 분명 사회적 책임에 속하는 것이다.

더구나 아내구타는 여성 개인의 인권침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파괴하는 사회범죄이기도 하다. 그간 <여성의 전화> 상담들을 통해 다루어진 수많은 사례들은 구타가정의 실상이 얼마나 심각한가를 파악하게 해주었다. 즉 아내와 자녀뿐 아니라, 친정과 시집 식구들이 얽힌 가운데 극히 비인간적인 가족관계가 형성되며, 구타당한 아내는 심한 경우 정상적인 생활을 포기할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 무력화, 심지어는 노예화 상태에 빠지게 된다.

반면 남편의 경우는 구타행위가 반복되면서 자기 내부에서 구타충동이 주기적으로 발동하는 심리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구타습성이 길어질수록 변태적이고 가학적인 정신질환 상태로 발전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가부장적의 권위주의적 문화가 남성 개인에게 내면화됨으로서

유발되는 사회심리적 병폐로서, 가해자인 남성 역시 스스로 피해자가 되 수밖에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구타가정은 가정이라는 껍데기만 쓰고 있을 뿐, 본질은 이미 파괴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내를 인간이 아닌 동물적 학대에 대항으로 삼는 가정에서 자녀들은 공포에 쩌들고

가족에 대한 사랑은 커녕 인간에 대한 증오감만 키워 갈 뿐이기 때문이다. 특히 자녀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비인간적인 교육환경에 처한 구타가정의 아이들을 방치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한편 최근에 50~60대 여성들의 이혼소송이 차츰 늘어가는 추세라고 하는데 주된 이유는 남편의

불륜이나 구타에 있다고 한다. 또한 현재 구타당하는 여성들의 대다수가 별거나 이혼을 희망

사항으로 꼽고 있다는 점 (<여성의 전화> [설문집계 보고], 1994, 1~3월)도 결국 구타 가정의

파탄사태를 시사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래에 와서 구타를 오랜 동안 참아 온 아내나 자녀가 급기야는 가장을 살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구타가정이 얼마나 참혹한 가정파괴로 종말지어지는가를 말해 주고 있다.

구타가정의 자녀들 중에는 "아버지를 죽이고 싶다는 식으로 아버지에 대한 심한 증오감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구타의 피해자가 결국에는 살인의 가해자가 되어 자기파멸을 자처하는

길밖에는 달리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다.

결국 우리 사회가 '가정의 평화'를 유지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아내구타를 방치하는 것은 사실상

가정파괴 범죄를 조장하는 것과 같다고 할수 있다. 여기서 '평화'란 가부장적 권위주의의 횡포를

묵인하고 영속화시키기 위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그러한 횡포를 가정파괴로 보지 않은 것은

가부장적 가족의 왜곡된 실상을 정상적인 것은 가부장제 가족의 왜곡된 실상을 정상적인 것으로

보는 엄청난 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2) 남성문화와 폭력문화/폭력의 사회화, 대물림, 확대재생산

우리 사회에서는 폭력을 남성성의 한 표현으로 보는 전통이 있다. 남성성은 흔히 공격성이나 힘의 과시와 상통하는 것으로 이해되며, 또 남성에게는 어느 정도 폭력행사가 허용도니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인류 역사의 발전과정에서 전쟁의 역사가 중요한 맥을 유지한단 사실에서도 전쟁의

주역이 되어 온 남성에게 폭력은 매우 친밀한 것으로 길들여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남성은 어린 시절부터 군대 생활에 이르기까지 신체적 힘을 키우는 훈련과정을 가지며 또 그

힘을 일상생활에서부터 놀이문화에 이르기까지 자연스러운 것으로 사용하고 과시하는 버릇을 익힌다.

또한 남성우월주의는 여성 앞에서의 충동적 발산을 남성문화의 특징으로 믿게 만들기도 한다.

구타습관을 가진 남편이 구타 당시 "자제력을 잃었다."고 쉽게 변명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예에

해당될 것이다.

특히 한국의 남성 사회에서는 말이나 순리로 해결되지 않을 때 거친없이 힘을 사용하는 형태들이

자주 발견된다. 하물며 국회나 절에서까지 폭력이 행사되는 모습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 한국인이다.

이와 같이 남성문화에는 폭력을 일탈이나 범죄가 아니라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취급하는 폭력문화가

본질적으로 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반대로 힘을 쓰는 것과 거리가 멀고 또 평소에 자제와 인내를 강요당해 온 여성은 폭력문화에

길들여진 남성과의 관계에서 대부분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아내 구타는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온 남성의 폭력문화가 가정내에 저항력이 약한 아내를 상대로 표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아내구타를 사회범죄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결국 "남자니까 폭력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편견에 의해 남성의 폭력문화를 안이하게 받아들여 온 사회풍토의 심각성을 문제삼는 것과 같다.

한편 아내구타는 자녀에게 폭력을 사회화시키는 사회적 병폐다. 구타남편은 아내뿐만 아니라,

자녀나 다른 식구들에게도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구타가정의

아동학대가 심각한 문제로 나타난다. <여성의 전화>의 1994년도(1~3월) [설문집계 보고서]에 의하면 구타남편의 58%가 자녀를 때리고, 그중 무차별 구타에 의해 피해 정도가 심한 경우도 20% 이상을 넘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타를 당하면서도 남편과 헤어지지 못하는 직접적인 이유 중의 하나로 "구타 당하는 남편에게 자식을 맡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설사 남편이 자녀를 직접 구타하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아내구타가 자녀들 앞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단 그 영향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게다가 구타당한 아내는 자녀를 때릴 가능성이 많다는 점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린 시절부터 폭력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가 폭력적 행동을 학습하게 된다는 것은 경험적, 이론적으로 자명한 사실이다.

즉 폭력을 일상적인 것으로 인지하고 폭력에 대해 죄의식을 갖지 않게 될 때 폭력의 경험은 악순환될 소지가 많은 것이다. 따라서 구타가정의 자녀는 폭력을 대물림하여 또 다시 구타가정을 만들어 낼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조사결과에서 대체로 구타 남편의 절반 이상이 구타가정에서 성장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들을 주시할 때 아내구타는 남성문화의 폭력성과 사회폭력의 범위를 확대 재생산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 수 있다. 다만 그 피해가 당장에는 가시적으로 여성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날 뿐, 그 잠재적, 장기적 피해는 남성을 포함한 사회 전체에 과급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가 사회가 이러한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폭력문화를 만연하게 하는 것임을 숙지해야 한다.

3) 폭력조장 사회환경과 매체산업

아내구타는 가정내에서 한 여성에게 일어나는 것이지만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환경과 밀접한 연관을 갖는다. 흔히 아내를 때리는 남성들은 사회생활에서 별로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전형

적인 행동

패턴이라는 지적이다(<한국여성개발원>,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27쪽, 1993), 이는

바로 가정이 그러한 남성들에게 있어 사회 현장을 대신해서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배출구로

제공된다는 것을 암시해 준다고 하겠다. 즉 사회생활에서 억눌린 감정이나 누적된 기장이 가정에서

자기 통제력을 잃고 아주 적나라하게 표출되는 방식으로 아내학대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그 대상이 아내가 되는 것은 앞에서 지적했듯이 가부장사회에서 어느 남편에게나 (사회적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약하고 만만한 상대가 바로 아내로 인식되어 왔고, 또 아내에 대한 남편의

행동은 사회적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사회생활에서 경쟁과 긴장이 심해질수록 그것을 풀어내고 싶은 욕구는 강해질 것이고 가정이 그

해소장치를 이용되기 쉽다. 구타남편의 경우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 때, 사회 생활에서 문제가 생길

때, 또는 하루일과에서 기분나쁜 일을 당하고 자존심이 상했을 때 그 분풀이를 아내에게 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한다.

예컨대 "네가 재수없는 여자라 일이 안된다"라든가 "너 때문에 집안이 망했다"든가 하는 식으로

자신의 불행과 사회적 실패를 아내 탓으로 돌리면서 구타 이유를 대는 것이다. 권위주의적인 남편일수록

사회에서 누적된 불만과 불행감을 아내구타를 통해 발산할 소지가 높다고 하겠다.

또한 술을 먹었을 때 구타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는데, 이것 역시 술의 힘을 빌려 사회생활에서

억눌린 감정을 본능적으로 배출하는 측면이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가 요구하는 이상적인

자기통제가 강할수록 그 반작용으로서 본능적 표출을 할 수 있는 탈출구로 가정을 택하기 쉽고 그러한

경우 아내구타가 습관화될 가능성도 높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 사회는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가정분 아니라 사회 전체를 매우 강하게 지배해 왔고 급속도의

자본주의 경제 성장 과정 속에서 치열한 경쟁과 긴장이 누적되어 왔으며, 또한 장기간의 군사독재 정치

체제하에서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군사문화가 심화되어 온 현대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환경은 바로 사회의 주역으로 자처해 온 남성들에게 억압과 해소 방편으로 폭력성에 길들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 급팽창하고 있는 매체산업 중에는 특히 폭력성을 부각시키거나 심지어는 미화하는 것들이 적지 않다. 일례로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영화들 중에는 충격적인 폭력물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 또한 성폭력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재미와 유희의 소재로 삼는 소비상품들을 만들어 내는 매체들이 날로 번창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것들은 폭력행위를 비정상적이고 위험한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게 만들 뿐 아니라, 폭력적 행동을 직접 모방하고 싶은 충동을 자극하여 암암리에 가정과 사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도록 부추기는 요인이 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근래에 와서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남성들 중에는 이러한 매체들로부터 받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내구타 현상은 구타남편이 매일 생활하는 사회문화 환경과 직접, 간접으로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점에서 아내구타 문제는 폭력을 조장하는 사회환경 문제의 맥락에서 함께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아내구타에 대한 사회통제의 시급성

아내구타 문제는 단지 구타당하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병폐와 관련이 깊은 것이며 또 다양한 사회문제들을 내포한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몇 가지 요소들은 각기 독립적으로 또는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내구타를 발생시키고, 또한 그 결과로 가정파괴, 병적 심리현상, 사회폭력의 재생산을 초래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아내구타를 방치함으로써 문제를 가중시켜 왔다. 그것은 우선적으로 아내구타를 사회폭력의 범죄로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법제도와 사회정책이 부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의 방관적이고 비협조적인 대응방식과 아내구타에 대한 그릇된 사회통념 등으로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여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가정폭력의 문제를 또 다른 사회폭력의 예방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고 아내구타 사건을 방치하는 경찰의 행위를 직무유기로 처벌하고 있으며, 또한 피해자를 위한 상담 및 보호기관과 가해자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 비하면 현재 한국의 현

실은

너무나 압당한 상태다.

우리 사회는 그간 구타당하는 여성들을 침묵하게 만들었고 피해 사실을 비밀처럼 숨기며 자책감과 굴욕감에 시달리게 했던 반면, 가해 남편들은 오히려 자유롭게 풀어 놓은 결과 구타의 악순환에 빠지게 하였다. 구타당한 여성에게 오히려 "맞을 짓을 했다"고 책임을 전가하여 가해자를 대신하여 피해자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은 기막힌 역설이 아닐수 없다. 한편 아이를 집에 두고 도망나온 아내들은 "자기 혼자 살려고 집을 나온 에미"라는 죄의식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자포자기 상태에서 증오하는 구타남편 곁으로 되돌아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혹은 남편의 구타를 피할 방법도, 또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방법도 막막한 현실에서 자살을 기도하는 여성들도 있다.

이러한 모순 속에서 구타가정의 비극적인 현실은 악화되었고, 아내구타로 고통당하는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로부터 심리적, 물리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되어 왔다. 이렇게 무지한 사회의 실상은 지난 10년간 열악한 조건에서 왜소한 여성단체로 외로운 투쟁을 해온 <여성의전화>의 역사 속에 잘 각인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을 힘이 없는 한 여성단체로 하여금 홀로 대신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에 아주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여성의 전화>가 상담하고 체험해 온 것을 보면 우선 아내구타에 대한 경찰의 태도에 문제점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심하게 구타당한 여성이 112에 신고를 할 경우 경찰은 출동했다가 그냥 돌아가 버리면, 또 맨발로 경찰서로 도망갈 경우 경찰은 심중판구 "가정문제는 가정 안에서 해결하라"고 하며 도움을 요청 하는 피해 여성을 집으로 돌려 보낸다고 한다.

또한 초동수사에서 경찰은 아내구타에 대한 그릇된 통념을 반영하는 편파적인 수사를 하기 일쑤라는 지적이다.

구타당한 아내가 살해에 가까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도 피보호자로 간주되는 아내에 대한 결정권을 가장인 남편이 행사하게 할 만큼 개인의 사소한 가정내 문제를 치부해 버린다는 것이다(<한국여성개발원>, 앞의 자료, 49쪽).

흔히 경찰은 처벌은커녕 관여조차 하지 않으려는 입장이어서 가해남편을 체포하거나 조서를 꾸미기를 꺼린다고 한다. 피해여성의 진술을 믿지 않으려 하거나 남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도록 종용하거나, 오히려 가해남편을 변명하여 피해자의 자책감을 유발하게 하거나, 또는 아내구타를 폭력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사건의 심각성을 아예 무시해 버리는 경향도 있다. 이러한 경찰의 입장은 지난 10년 동안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 <여성의전화>의 결론이다.

이 모든 것은 가해남편을 피해 해결책을 찾으려 용기를 내어 가정 밖으로 나온 여성들이 오히려 국가와 사회가 본질적으로 남편과 공모 관계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하고 더 심한 좌절감을 갖게 됨을 말한다. 이와 같이 피해자를 좌절시키고 가해자를 옹호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에서 바로 아내구타 문제의 본질을 파악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아내 구타

현상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의 모순과 환경의 요인들이 심각한 것 못지않게, 그 해결의 차원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장애가 되는 사회적 요인들이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러한 장애들은 아내구타의 근절이 아닌 지속을 유도하는 상반도니 사회통제 기제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장업은 결코 쉽지가 않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다라서 아내구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매우 다각적인 차원에서 동시에 모색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우선 구타피해여성들과 그 자녀들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직접, 간접의 보호조치와 가해남성의 관리와 치유대책이 법적, 제도적으로 또 정책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동시에 가족, 학교, 대중매체, 사법기관 등에서 다같이 아내구타를 사회폭력 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함께 대처하도록, 통념의 변화를 유도하는 교육과 사회운동이 요구된다.

보다 거시적으로는 아내구타를 조장하는 가부장적 가족구조의 변혁과 이를 지지하는 사회제도와 사회문화적 규범들을 개선하는 일련의 구체적인 노력들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아내구타를 포함한 각종 사회폭력을 조장하는 사회문화 환경과 매체산업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일도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일차적으로 아내구타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작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아내구타는 여전히 부부문제에 취급되어 기존의 형법 적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의 보다 근본적인 의미는 우리 사회가 아내구타를 사회폭력의 범죄로 공인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통제의 장치를 마련하는 첫걸음이라는 것과, 동시에 아내구타에 대한 성차별적인 사회통념의 장벽을 깰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마련한다는 것이 있다.

심영희(한양대, 사회학 교수)

우리 사회에서 가정은 따뜻하고 편안한 안식처로 인식되고 있지만, 생각해보면 이것은 남성의 입장에서 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입장에서 본 가정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라기보다 가사노동 들의 신체적 노동뿐만 아니라 자신의 기분과 무관하게 가족의 희노애락을 함께 즐거워하고 슬퍼해야 하는 정서적 노동 까지도 제공해야 하는 일터이다. 더구나 구타당하는 여성에게 가정은 고통과 괴로움의 장소이기도 하다.

여기에서는 가정폭력의 여러 유형 중 아내구타의 초점을 두고 그 대책, 특히 법적 대책을 모색하는 논의를 여성의 입장에서 시도하기로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내구타의 정도는 꽤 널리 확산되어 있고, 그 정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내구타를 개인과 가정의 사적인 문제로 간주하는 사회통념 때문에 사회

문제로 보는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다.

1. 아내구타의 확산도 및 낮은 인지도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아내구타는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기간동안 경한 폭력, 심한 폭력 모두 합쳐서 남편으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45.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아내구타라고 할 수 있는 심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9.1%로 나타났다. 이를 미국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미국의 경우(1985) 총 폭력은 11.3%, 심한 폭력은 3.0%로 우리나라의 아내에 대한 폭력이 미국보다 약 3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서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이 만연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Shim,1993)

그러면 우리 사회에서는 가정폭력이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왜 신고는 지극히 저조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떤 남편이 아내를 상해를 입힐 정도로 때리는 일을 목격하는 가상적 상황을 주고 그런 경우 경찰에 신고하겠느냐고 물어보았더니 절반 이상(52.2%)이 신고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신고하지 않으려는 이유를 물어보았더니 대다수(80.5%)가 '남의 가정일에 끼여드는 격이어서' 라고 대답했고 소수가 경찰에 신고할 만큼 심각한 일이 아니므로(7.0%)라고 대답했다. 즉 아내구타를 사회적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운 가정문제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일부는 경찰에 신고해도 별 효력이 없을 것 같아서(7.0%), 신고하는 일이 번거롭고 나중에 귀찮아지므로 (2.8%)라 대답했는데 이것은 형사사법 처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는 것이다.

2. 아내구타 대책의 현실 및 문제점

아내구타에 대한 대책을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규범, 관련 민형사법, 관련 사회복지제도 등을 모두 논의해야겠으나 지면 관계상 여기서는 주로 법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1) 현행법 실태 및 문제

현재 우리나라에는 아내구타에 관한 처벌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아내구타 문제의 적용,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형법 25장 '상해와 폭행의 죄'규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아내구타 남편을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상해와폭행은 죄에도 조속에 대한 폭행은 규정되어 있으나 비속 및 아내에 대한 폭행은 명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면 이러한 현행법하에서 아내구타 사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현행법 하에서도 구타남편을 고발 할 수는 있는 이런 경우 최소 3주 이상이 진단서가 첨부 되어야 한다. 또 아내는 남편을 고발하고 함께 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먼저 남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민법 친족법 840조 3호)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 (6호)를 근거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전업주부가 많은 우리현실에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의 어려움과 자녀와 헤어지기 어려워하는 어머니로서의 정서를 고려할 때, 이혼소송 제기를 어렵게 하고 따라서 사실상 형사 고발을 매우 어렵게 하는 것이다.

아내구타를 다루는 법의 부재와관련 가능한 현행법상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아내구타를 명시적으로 다루는 새로운 법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새로운 법은 어떤 모습을 띠어야 할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외국의 아내구타 규제법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3. 외국의 규제 사례

1) 미국의 아내구타 관련법들

미국에서는 1973~1983년 10년 사이에 47개주와 워싱턴 D.C.에서 가정폭력 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사회적 반응을 수정하기 위한 법들이 제정·시행되었다. 그런 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법구조는 가정폭력을 포함하지 않았다. (Buzawa and Buzawa, 1985) 보다 구체적으로 메사추세츠의 경우, 1978년에 확대되는 사람을 보호하고 가정폭력 사건에 보다 나은 경찰의 보호와 개입을 제공하고 있다. 이 법에 의해 미국은 아내구타에 대해 민사적 보호명령으로부터 상당한 근거에 의한 영장 없는 체포 및 형사 기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대응을 할 수 있었다.

보다 최근의 개혁입법은 1990년대에 왔다. 1990년에 미국의회는 한쪽 부모가 가정폭력을 하면 자녀에 대한 친권을 빼앗는다는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고 이것은 30개 주에서 채택되었다. 그러나 가장 극적인 정책개혁은 조셉 바이든 상원의원의 대여성 폭력방지법인데 이것은 성폭력과 가정폭력을 하나로 묶어 여성에게 안전한 거리, 안전한 직장·학교, 안전한 집을 만들어 주려는것이 기본 목적이었다. 이 법은 또 가정학교 대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Hoffman, 1992)

또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992년부터 아내를 때리는 가정폭력을 인종, 종교, 성차별의 경우에 적용되는 증오범죄로 분류하는 한편, 폭행당한 아내들이 겪게 되는 병리적 고통을 전문가의 증언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통과, 시행되었다. (법률안 AB 1009) 증오범죄로 법정에 서면 최고 징역 1년과 벌금 1만 달러 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 일어나는 여성피살사건의 33%가 남편이 저지른 것이며 모든 가정에서 60%의 아내들이 남편들로부터 폭행당했거나 당하고 있는데, 이 법률안이 제정됨에 따라 캘리포니아는 미국내서 폭행하는 남편에게 가장 엄격한 형벌을 내리는 주가 되었다고 한다. 한편 피해여성들은 폭력을 당한 직후 작성한 보고서에서 폭행진상을 소상하게 적시 하지만 막상 법정에 서면 피해사실을 최소화시키는 증언을 하는 바람에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법의 제정으로 이 문제 전문가들이 증언대에 서게 됨에 따라 이런 문제점들이 크게 줄게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코리아 타임즈, 뉴욕, 1991. 12. 12)

여기에서는 이러한 법들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보여주기 위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모방되는 가정폭력 개입 프로그램인 미네소타 주 둘루스 시의 둘루스 모델 (Duluth Model)을 간단히 소개하겠다.

2) 법의 실제 적용 예 : 둘루스 모델 (Duluth Model)의 가정학대 개입 프로젝트 (DAIP : Domestic Abuse Intervention Project)

미네소타 주 둘루스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모방되는 가정폭력 개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곳으로 이 모델을 둘루스 모델이라 한다. (Hoffman, 1992) 둘루스는 1982년에 이미 가정폭력 사건에 부과되는 범죄혐의인 경범죄 폭행에 대해 필수체포정책을 채택한 최초의 지방관할 구역이 된 곳으로 유명하다. 둘루스의 개입 프로그램의 목적은 경찰, 검사, 보호관찰관, 판사 등 사법체계의 담당자 모두가 가정폭력은 지역사회가 관용하지 않는 범죄라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중심은 '가정학대 개입 프로젝트' (DAIP: Domestic Abuse Intervention Project)로서 이것은 모든 조직을 끊임없이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이 프로젝트는 또한 구타자들의 집단을 운영하고 구타자와 자녀 간의 친권 방문을 감독하는데 일년에 \$162,000(약 1억 3천만원)으로 운영된다. 제정은 주의 교정부, 재단 지원금 및 DAIP의 매뉴얼 및 연수 세미나비에서 들어온다.

둘루스 모델은 미네소타 전역의 지역사회, 로스앤젤레스, 볼티모어, 샌 프란시스코, 내슈빌, 시애틀 같은 도시에 그리고 캐나다, 스코틀랜드,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나라에서 모방된 것으로 조직의 기적이라고 묘사되었다.

이 모델에 의하면 초범은 하룻밤 구금된다. 그가 유죄임을 인정하면 그는 30일 구류를 선고받고, 26주간의 구타자 프로그램을 마친다는 조건으로 보호관찰에 놓여진다. 그가 세 강의를 연속으로 안 나오면 감옥에 보내진다. 민사보호명령을 받은 남자들도 보통 같은 치료 프로그램을 보내진다. 이 전과정 동안 쉼터에서 온 간부와 자원봉사자들이 피해자와 접촉을 한다.

많은 전문가들은 둘루스가 20년간 구타당하는 여성을 위한 운동이 성취하려 애썼던 것 중 최선의 것을 구현하고 있다고 간주한다. 이 운동은 60년대 후반에 강간위기 센터를 열었던 기층 여성운동에서 영감을 받아 70년대 중반에 비상 쉼터들의 연합으로 생겨났다. 둘루스 자신의 쉼터인 여성연합(The Women's Coalition)은 1978년에 설립되었다. 몇 년 후 전국운동의 다면적 접근을 반영하여, 둘루스의 활동가들은 지방의 법집행 기관들로 하여금 이 이슈를 심각하게 다루기를 촉구했고, 궁극적으로 구타자들에게 처벌뿐만 아니라 치료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이 모델이 포괄하고 있는 필수체포제, 고소취하 없애기, 보호명령, 구타자 프로그램 등을 보다 상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ㄱ) 경찰의 필수체포제

아내구타에 대한 경찰의 체포가 정책으로 확립되고 나서도 전통적인 관행은 경찰관이 경범죄 폭행을 직접 목격하지 않는다면, 체포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는데 반해, 새로운 관행은 피해자의 가시적 상해를 포함하여 경찰관이 도착 4시간내에 경범죄 가정폭력이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probable cause)가 있다면, 경찰관은 영장 없이 체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1993년에 들루스 경찰은 176명의 남자와 23명의 여자를 경범죄 가정폭력으로 체포했고 그중 거의 모두가 유죄를 받았다고 한다.

필수체포제의 문제점

지난 수년간 필수체포제는 점점 더 인기가 높아져 수십개의 도시와 15개의 주에서 채택되었다(비록 집행에 있어서는 조금씩 달라서 일관성은 없지만). 아직도 필수체포제는 경찰과 검찰로부터 우호적인 평가를 받고 있으며, 들루스 학대 개입 프로젝트 DAIP 설문조사에 의하면 피해자의 71%가 들루스 경찰이 자신의 상황을 처리한 방식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경찰 체포가 가정학대 피해자를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특히 일부 구타여성 대변자들은 회의적인데, 왜냐하면 이 정책이 가난한 소수민족 가족들에게 과도하게 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전문가들 지적에 의하면 구타는 모든 인종과 계급에 걸쳐 일어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중간계급 가구의 남자들보다 당국에 보고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보다 높다는 것이다.

필수체포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은 그것이 역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때때로 서로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고 비난하는, 피투성기 된 두 사람을 당면했을 때 경찰은 남자뿐 만 아니라 여자도 체포한다는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린이들은 양부모에게 보내질 수 있다. 미국에서 가정폭력 정책이 가장 엄한 코네티컷에서 쌍방 체포율은 14%이다.

나) 검찰의 고소취하 없애기 정책

많은 경찰들은 아직도 체포를 꺼려하는데, 이는 검사들이 사건을 기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사들은 피해자들이 구타자의 복수를 두려워하거나 앞으로 안 그러겠다는 남편의 약속을 믿고 고소를 밀어붙이기를 거부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행동부족을 피해자에게 떠넘긴다. 그러나 들루스는 공무원들이 고소취하 없애기 정책이라고 부르는 정책을 가지고 있다. 즉 피해자의 소망과 무관하게 검사는 거의 항상 사건을 쫓는다는 것이다.

들루스의 검사들은 피해자들이 협조하지 않으리라고 가정하고 피해자의 협조와 상관없이 증거를 확보하는 절차를 작동시키고 있다. 재판에서 검사는 경찰사진, 911에 한 전화의 녹음테이프 및 의료기구 등을 제시한다. 그들은 또한 모든 피해자들을 소환한다. 만약 피해자가 증언대에서 자신의 말을 철회하면, 검사는 주의 증거에 대한 규정을 특이하게 이용하여 그 여성이 경찰에 한 원래의 진술을 제시한다. 이것은 검사가 증인을 탄 핵소추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검사들은 법정에서 가정폭력 사건으로 지는 경우가 드물다고 한다.

고소취하 없애기 정책의 문제점

전국적으로 보아 가장 적극적인 가정폭력 검사들 일부는 필라델피아, 샌 프란시스코 및 샌디에고에 있다고 한다. 이곳은 매달 적어도 2,000건의 새 사건이 접수되는 곳이다. 여성들이 하여금 증언하도록 압력을 주기 위해, 일부 검사들은 피해자들에게 허위 경찰 조서 접수 및 허위증언 등의 협의를 씌우고 범정보록 딱지를 발급하고 심지어 구급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다. 고소취하 없애기 정책은 열띤 논쟁을 불붙였다. 한 검사는 최근 전국 지역검사협회 소식지에서 이 제도가 최악의 온정주의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대해서 한 판사는 일부 관할지역은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도록 허용하는데 '그것은 그들이 이 범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미묘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라고 응답하였다.

ㄷ) 민사적 보호명령

보다 엄격한 정책들이 보다 많은 사건들을 형사법원으로 전환시켰지만, 구타자들을 집에서 내보내기만 혹 감옥에 보고고 싶어하지 않는 여성들은 다른 길, 즉 민사적 보호명령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다. 이것은 구타자가 피해여성 및 그 자녀와 접촉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이 보호명령에는 다음의 것들이 있다.

- 1) 임시 제한명령 (Temporary Restraining Order)
- 2) 임시 퇴거명령 (Temporary Vacate Order)
- 3) 임시 친권명령 (Temporary Custody Order)
- 4) 임시 부양명령 (Temporary Support Order)
- 5) 금전적 배상명령 (Monetary Compensation)
- 6) 기타 명령 (Other Orders)

구타당한 여성이 그러한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복잡한 과제가 될 수 있다. 각 관할 구역은 보호대상 자격자가 누구인지, 보호명령의 기간은 얼마인지에 대해 자체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처음에 그러한 명령을 얻는 데 대해 할까 말까 혼합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은 청문회 절차에 금방 좌절하여, 피해여성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리기도 한다. 각종 주 법원체계에 대한 성편견 연구들은 판사들이 구타당한 여성들을 오히려 처벌한다고 이들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둘루스에서는 범조계를 표정으로 삼고 구타피해 여성들이 두려워하는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판사가 구타자에게 그냥 강의나 벌금만 물려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했다.

그래서 둘루스 지방법원의 판사들은 보호명령 청문회를 주재할 때 만약 여성이 구타자가 올까봐 법정에서 나타나지 못한다면, 보호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성이 협박받고 있다는 이론 위에 그 명령을 한두 달 더 지속시킨다고 한다.

ㄹ) 법원의 구타자 처분 및 구타 프로그램

법원은 구타피해 여성에게 보호명령을 내릴 뿐 아니라 구타남편에게도 판결이나 처분명령을 내린다. 이 처분명령은 상담 프로그램에 의뢰하는 것으로부터 징역 및 벌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나 법원은 이 다양한 처분양식에 적절히 조합하여 당근과 채찍의 효과를 내게 한다. 이 중 특히 중요한 것은 구타자 프로그램에 의뢰하는 것이다.

구타자 프로그램은 여성에 대한 구타자의 행동을 바꾸려는 시도다. 이 시도는 너무나도 어려워서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전역의 적어도 250개의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를 시도하고 있으며 이들은 자원봉사자의 법원이 의뢰한 고객들로 짝 차 있다. 이 프로그램들 사이에는 치료의 철학이나 기간에 대한 아루런 합의도 나타나지 않았다. 예컨대 피닉스 법원들은 구타자를 12주 이상 상담에 보내는데, 샌디에고 구타자들은 1년간을 다녀야 한다.

12년간 구타자 프로그램을 평가, 개발한 사회학자 에드워드 골돌프(Gondolph, 1987)는 구타자들에게는 여러 부류가 있다고 말한다. 즉 보통 종류의 구타자들--초범 구타자 또는 간헐적 구타자들--과 다른 중핵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다. 후자는 가장 치명적인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다른 중핵 인물들이 있다는 것이다. 후자는 가장 치명적인 사람들인데, 이들에게는 손이 미치지 못하는 시정이라고 한다. 골돌프는 법적 체계를 거쳐가는 구타자들은 보다 주의깊게 부류가 되어야 하고 일부는 구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가 반사회적 또는 심지어 소시오패스(사이코) 구타자라고 분류하고자 하는 남자들은 ---약 30% 정도인데---개입에 저항할 뿐만 아니라 개입으로 인해 더욱 적대적으로 될수도 있는 사람들이다.

골돌프는 여성들에게 자신의 파트너들이 상담에 들어갈 때는 입소하지 말라고 주의를 준다. 여자는 '그이가 애쓰고 있다면 나는 그를 지지해야 해'라고 생각하지만, 반면에 남자는 '나는 내가 원하는것, 즉 아내를 되찾을 때까지 프로그램에 갈거야'라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남자가 상담 프로그램에 있다는 것은 여자를 방심하게 함으로써 그녀에게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둘루스에는 구타자가 DAIP에 들어오면 여성연합 수미터의 사람들이 피해자와 밀접한 연락을 유지한다. 또 다른 구타가 있었어도 경찰에 신고하기 꺼려하는 여성은 쉽터 상담원에서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고 상담원은 집단 지도자에게 말하고 집단 지도자는 다음 주 상담 모임에서 그 남자에게 따진다는 것이다.

구타자 프로그램의 내용

구타자 프로그램은 구타의 원인에 대한 인식에 따라 달라진다. 왜 남자는 여자를 때리는가에 대해 가족 폭력 연구의 권위자인 리차드 겔즈(Gelles, 1985, 1990)는 남자가 때리는 것은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구타를 통해서 그들은 여자에게 상처를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자아 가치감과 그것에 대해 뭔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 프로그램은 가족 역사를 탐색하면서 치료적(therapeutic) 접근을 사용하는 반면, 다른 프로그램을 심리학자 르노어 워커(Walker, 1979)의 구타의 역주기 이론에서 나온 모델을 구사한다. 즉 남자는 서서히 긴장을 축적시키다가 파트너에게 폭발하고 밀월기간 동안 용서를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들루스 DAIP의 소장은 이 두접근 모두가 구타자의 여성에 대한 증오와 여성을 지배하려는 그의 욕망에 대결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들루스의 26주프로그램은 2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첫번째는 보통 정신건강센터에 의해 운영되는데, 남성들에게 자신의 분노로부터 떠나가도록 가르치려고 하는, 보다 전통적인상담을 강조한다. (분노 통제 프로그램)두번째는 DAIP에 의해 운영되는데 남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학대를 인정하도록 자극하고 학대 밑에 깔려 있는 사회적·문화적 힘들을 알아내도록 자극한다고 한다. 1990년에 들루스는 그프로그램에 350명의 남성을 보냈다. 이에 비해 뉴욕시의 피해자 서비는 300명을 보냈을 뿐이라고 한다.

ㄱ) 보다 많은 쉼터의 필요성

여성들은 학대관계에 너무 오래 머무르는 수가 많은데 여기에서 많은 이유가 있다. 첫째, 많은 구타피해 여성은 수년간 자신의 결혼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고 믿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여성과 남성폭력]의 저자인 수잔 셰흐터(Susan Schechter)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가 시작 되기 전에 수년이 걸릴 수 있고, 여성이 남편의 폭력에 대해 자신이나 남편의 나쁜 어린 시절을 비난하지 않는 것을 배우는 데는 더 오랜 시간인 걸릴 수 있다고 한다.

둘째, 일부 여성들이 머무는 이유는 글들이 떠나면 죽으리라는 합당한 기대가 있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당국에 신고되는 가정폭력의 3/4 정도가 여성이 떠난 후에 발생한다.

셋째, 또 일부 여성들이 머무는 이유는 그들이 떠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이 없거나 아니면 오랫동안 친구와 가족으로부터 소외되어서 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미국 전역에는 1,200개의 쉼처가 산재해 있는데, 많은 쉼터들이 도움을 청하는 여성 넷중에 셋을 돌려 보내야 한다고 보고한다. 들루스의 쉼터는 30명의 여성과 어린이를 수용할 수 있고 라스베가스의 쉼터는 단 27개의 침대를 가지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3) 영국의 경우

영국에서는 1975년 부부간 폭행문제를 조사하기 위해 발족한 '결혼한 부부 사이의 폭력에 대한 특별 조사위원회' (Select Committee on Violence in Marriage)의 제안에 의해 1976년 매맞는 부인들을 위하 특별법인 '가정폭력 및 혼인 소송법(The Domestic Violence and Matrimonial Proceedings Act:the DVMPA)'이 제정되면서 전통적인 법률에서 개혁입법으로 전환했다. 이것은 고등법원이나 주 이혼법원이 금지명령, 별거명령(non-molestation, and exclusion/ouster injunctions)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긴 남편을 체포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법에서 획기적인 것은 이혼이나 별거소송의 보조 수단으로서 금지명령을 발부할 수 있게 한 규정을 폐기함으로써 이혼이나 별거소송을 내지 않더라도 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게 한 것이다. 이것은

후에 추방명령 등으로 수정, 강화 되었다. 1978년에는 '가정 소송 및 치안재판소법 (The Domestic Proceedings and Magistrates' Court Act:DAMCA)'이 생겨 기혼여성에게 명령을 발부할 권리를 치안 재판소에게 부여, 여성들이 이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Susan Maidment, 1985).

4)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는 아내구타가 많은 나라로 유명한데 여성단체들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찰의 SOS 전화 중 60%가 매맞는 아내들로부터 걸려오는 것이라고 한다.(여성개발원, 1993) 1991년에 신설된 '폭력남편에 대한 특별법'에 의하면 아내를 때려 아내가 1일~7일까지 일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았을 경우, 남편은 징역 2년에 20만프랑 (2천6백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은 종전 일반형법의 처벌조항(징역 10일~1개월과 벌금 5천 프랑(약 65만원))에 비해 징역기간은 무려 72배, 벌금액은 40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93. 5. 2.)

4. 아내구타 대책의 방향

1) 법적 규제의 방향

우리나라에서는 '성폭력특별법'이 94년 12월에 통과되어 9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가정폭력, 아내구타도 이제 형법에 포함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두 법이 따로따로 규정될 필요없 '여성에 대한 폭력방지법' 등의 이름으로 하나의 법으로 통합되어야 한다. 길거리에서 성폭력에 떨고, 집에 들어와서 가정폭력에 떠돌아다니는 여성이 갈 곳은 아무데도 없기 때문이다. 여성을 위한 안전한 거리, 안전한 직장뿐만 아니라 안전한 집을 만드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현실점에서 어렵다면 '가정폭력에 관한 특별법'을 따로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공식범죄 통계에 가정폭력이 범죄의 중요한 범주로 포함되어 있어 매년 집계되고 있다. 이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 가정폭력을 규정하는 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의 내용에 무엇을 담아야 할 것이냐의 문제다. 우선 폭력의 개념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선 직접적으로 폭력이 사용된 경우가 주로 포함되지만, 그외에 직접적인 협박도 포함되어야 하고 간접적인 위협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구타 피해 여성이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민사적 보호명령 신청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보다 자유로이 법에 호소 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 등 민사적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처벌이나 처분의 유형으로서는 징역, 벌금 등 형사적 처벌 뿐 아니라 보호명령, 구타자 프로그램에 의뢰하는 등 민사적 처분도 다양하게 포함, 실제적 효과를 거두는 법이 되도록 해야 한다.

2) 법의 실제 작용 방향

법의 규정도 중요하지만 실제 작용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면에서 경찰, 검사, 판사, 보호관찰관 등 사법기관 각 단계 담당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들이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둘루스 모델에서 보았듯이 필수체포제, 보호명령, 불기소 없애기, 법원의 처분 중에 구타자 치료 프로그램에의 의뢰를 포함, 보다 많은 쉼터의 필요성 등이 우리 사회에도 적극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들 모두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필수체포제의 실시라고 생각된다. 이것이 되어야 다른 정책들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법적 제도 사이에, 그리고 법적 제도와 민간 프로그램 사이에 긴밀한 연계관계가 중요하다. 즉 체포, 기소 등 형사적 절차와 보호명령, 구타자 프로그램 같은 민사적 절차들이 서로 긴밀히 연계되어 있어야 하고 이들 법적 처분을 실현하도록 도와 줄 민간단체나 반민 반정부 단체의개입 프로그램과의 연계가 긴밀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루스 모델이 성공한 것은 그 개입 프로젝트가 바로 여러 제도 사이를 긴밀하게 연계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 아내구타로 인한 배우자 살인사건의 정당방위 인정 문제

끝으로 한 가지 더 언급하고 싶은 것은 아내구타로 인한 배우자 살인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문제다. 이형자, 이순심 사건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이 사건들을 어떤 시각에서 보아야 하는지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보면 여성의 가해는 피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드러난다. (심영희, 1993) 예컨대 많은 10대 소녀들과 젊은 여성들이 집에서 피해와 학대를 피하거나 저항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향이 있는가 하면, 다른 여성들은 수년간의 신체적·성적 학대를 겪은 후에 남편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미국 교정학회(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90)가 미국의 감독에 있는 여성들에 대해 실시한 전국조사에 의하면 조사대상 여성의 반 이상이 신체적 학대의 피해자였고, 36%가 성적 학대를 받은 사람이었다고 한다. 소년사법 체계에 있는 소녀들의 숫자는 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3/5 이상(61.2%)이 신체적 학대를 경험했고, 이 중 거의 절반의 경우 그러한 학대가 11번 이상 일어났으며, 성적학대를 경험한 사람도 54.3%로 비슷하게 많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학대가 시작된 것은 9살 이전이었다고 한다. 또한 구금되어 있는 남자들 중 이전에 성적·신체적 학대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증거도 나오기 시작하고 있으나 그 비율은 여성의 경우 훨씬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의 경우, 오랜 학대의 피해자가 극단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음을 보여 주는 연구가 있다.(심영희, 1993) 이형자, 이순심 사건은 오랜 동안의 아내구타 끝에 남편을 살해한 경우로, 이러한 예들은 여성의 경우 극단적인 강력범죄는 매우 드물지만 심하거나 오랜 학대의 피해를 받은 경우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범죄 뒤에 여자가 있다'는 말이 있지만, 오히려 '여성범죄 뒤에 남자의 학대가 있다.'는 말이 이 경우에는 더 맞는 것 같다.

그런데 수년간의 신체적, 성적학대를 겪은 후 남편에 대해 범죄를 저지른 이러한 성범죄자의 경우로, 학대를 받고 있는 도중이나 직후에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잠들거나 술취해서 쓰러져 있는 무기력 상태에서 범죄를 일으키는 비율이 높고, 재판시 이것은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로 간주되어 비슷한 범죄를 범한 남자 범죄자들보다 높은 형량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경우, 여성범죄의 행위만 볼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 있는 맥락을 고려하여 이를 정당방위로 인정한다든지 일시적인 정신이상으로 보든지 하는 등 반드시 정상참작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5. 맺음말

가정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아무리 좋은 형사사법적, 사회복지적 대책이 마련된다 하더라도 이에 한계가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가정폭력을 억제하기 위해 형사사법적 체계의사용이 미국전역에서 널리 유행되고 있지만, 아내구타의 발생은 줄어들 줄 모르고 있고, 가장 좋은 아내구타 개입 모델이라고 하는 둘루스 모델의 설립자도 구타관계에 있는 여성에게 주는 충고는 단순히 '떠나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프로그램도, 심지어 둘루스 프로그램조차도 폭력적인 남자가 방식을 바꾸리라는 보장을 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아내구타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을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남편이 아내를 개인의소유라고 생각하는데서 벗어나고 아내구타를 사적인 부부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폭력범죄로 간주하고, 여성 역시 아내구타를 자신의 경험이나 잘못 때문이라고 간주하는데서 벗어나서 폭력범죄로 인식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 검사, 판사 역시 아내를 남편의 소유물로 보는 가부장적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아내구타를 남의 가정일이 아니라 사회문제, 폭력범죄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의식의 전환 없이 형사사법적이나 사회복지적 대책만으로 아내구타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것이다.

참고문헌

동아일보, 1993. 5. 2.

심영희, 1993, 여성범죄와 여성범죄자의 특성: 여성학적 관점에서 교정교화 5호, 5-33.

여성개발원, 1993, 가정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코리아 타임즈, 뉴욕, 1991. 12. 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가정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American Correctional Association, 1990 The Female Offender: What Does the Future Hold?. Washington D.C., St. Mary's Press.

Buzawa, Eva S., & Buzawa, Carl G. 1985 "Legislative Trends in the Criminal Justice Respons to Domestic Violenced," in Alan Jay Lincoln & Murray A. Straus, Crime and the Family, Springfield, IL: Charles Thomas Publishers,

Gelles, Richard & Cornell, Claire 1985, 1990 Intimate Violence in Families, 2nd ed.,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Gondolph, Edward W. 1987 "Enaluating Programs for Men Who Batter: Problems

and Prosperc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2: 95-105.

Hoffman, Jan 1992 "When Men Hit Women," The New York Times Magazine Feb 16, 1992.

Maidment, Susan 1985 "Domestic Violence and the Law: The 1976 Act and Its Aftermath," in Norman Johnswow (ed.,) Marital Violence, London: Routledge & K. Paul.

Shim, Yong-hee 1992 "Victimization of Domestic in Korea." paper prpresnted ath the 44st Annual Meetings of American Socity lu Society of Criminolohy, New Orleans, Noveber, 4-7, 1992. 한양대 사회과학대학, 사회과학논총 11집.

Walker, lesor 1979 the Battered Woman, New York: Harper & Row

홍강의(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 정신의학과 교수)

서 론

아동학대에 대하여 1962년 Kemp가 피학대 유아증후군을 발표한 지 30년이 되었다. 한국에서도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은 전문가들 사이에 간헐적으로(권은주 1977, 성민선 1979) 논의되어 오다가 1979년 '세계 아도의 해'를 맞이하여 아동학대에 관한 관심도가 높아져 동년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아동학대 고발센터'를 설치하였으나 신고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 1년 만에 폐지된 일이 있었다. 한편 의학계에서는 오창규 등(1975)과 전행조 등(1979)이 피학대 아동 사례를 의학학술지에 보고한 바 있었으나 크게 관심을 모으지는 못하였다. 1985년 <서울시립아동상담소>에서 '아동권의 보호신고'를 개설하여 활동을 시작한 것이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에 개입한 시초라고 할 수 있겠다. 한편 1984년 주영희가 가출아동을 통한 학대조사를 보고한 바 있고, 김광일 등(1985) 한영의대에서는 아내구타에 관한 조사 연구를 하는중 60% 이상이 아동학대를 겸한다는 연구결과를 얻었고 이에 관심이 모아져 김광일, 부복자(1987)는 국민학교 아동의 8.2%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심하게 구타를 당한다는 아동구타 결과를 보고한 바 있으며, 아동현과 홍강의(1987)등은 3,700여 명의 의사에게 아동학대에 관한 설문을 보내 조사 연구한 바 있는데, 응답자의 64%가 학대받은 아동을 치료한 적이 있다고 하였고 연간 144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한 상처를 받았고 이 중에 67명은 심한 상처, 예를 들어 골절상, 두뇌손상, 화상을 입었고 심지어 6명이 사망하였다는 보고를 함으로써 우리나라도 아동학대가 매우 심각한 문제임이 확인되기 시작하였다.

드디어 1989년 3월에 아동의 복지에 관련되는 여러 분야의 다학제적 전문가들이 뜻을 모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창설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동학대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점차 활발한 연구활동을 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괄목할 만한 것은 성적학대에 관한 연구들로서 1989년 심영희에 의한 '성폭력에 관한 연구' 1989년 정동철에 의한 '대도시 청소년의 성폭행 실태 조사' 1990년 이종복의 '청소년 성의식 연구' 등이 진행되었고, 드디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1991년에 개설되었다. 한편

<한국 어린이재단>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오랫동안 기아, 미아를 위한 대책에 힘써 왔는데 연간 13,000명의 기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이배근 1987) 이들에 대한 봉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학부모연대>가 개설되어 특히 학교에서의 폭력이나

부당행위, 학대 등에 관심을 쏟고 있으며 <신나는 전화상담> 등에서는 아동과 청소년의 전화상담을 통한 아동권익에 관한 활동도 전개해 왔다.

이와 같이 뜻있는 전문가들의 활동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아동학대와 그 심각성이 일반대중에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자기부정, 즉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을 리가 없다"는 사회통념적인 고정관념 때문이라 볼 수가 있다. 이는 또한 아동에 관한 한 모든 것이 부모의 권리이며 외부로부터의 간섭을 일체 거절하는 부모의 태도에서도 비롯되며 아동구타가 훈육과 교육을 위한 체벌과 구별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제까지의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에 대한 모든 노력이 민간단체 주도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국가적으로 유기, 방임된 아동에 관한 보호적인 차원에서만 최소한의 개입이 이루어졌지, 정작 학대아동들의 발견·치료·예방의 차원에서

전혀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홍보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러나 최근 성적학대에 대해서는 일반대중의 관심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아마도 유교적인 전통이 뿌리박힌 한국에서 연일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 성적학대의 실상이 아동구타에 관한 문제보다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현재는 아동학대 문제의 심각성이 어느 정도 인식되기 시작한 상태이나 이에 따라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 되고 있는데, 특히 아동학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확인하며 누가 어떻게 도움을 주어야 하는 등의 문제이다.

본논문에서는 이미 알려진 아동학대의 현황을 정리하고, 이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실제적인 문제점을 중심으로 토론하고, 앞으로의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을 시도하려고 한다.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아동학대의 정의는 어떠하며 어떤 종류가 있는가에 관하여는 학자들간에도 논란이 계속되고

있고 더구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이 미미한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의 훈육과 교육으로서의 매질과 아동학대 사이에 큰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아동학대를 신체적인 구타라든가 아동성폭력에 국한시킨다면 정의가 명확해지는 것 같지만 이러한 분명한 학대에 의한 상처라도 우발적이냐 비우발적이냐를 가지고 쟁점을 이룰 수 있다. 또한 그것이 소위 '사랑의 매'냐, 고의적인 체벌이냐, 학대냐를 구별하는데 문제가 있을수 있다. 더구나 학대를 Gil(1974)처럼

아동발달을 저해하는 모든 환경적인 저해 요소나 결핍 요소까지를 포함시켜 정의한다면 학대의

범위가 매우 모호해지고 더 큰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이런 광의의 정의는

아동학대 예방운동을 막 시작한 한국 사회에서는 학대의 개념과 인식에 혼동만 초래하고 관심을
저하 시킬 수 있으므로, 가능하면 학대에 대한 정의를 일반인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제시한 아동학대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들은 학대를 '가정내
아동
학대'와 '가정의 아동학대'로 나뉘었고 가정내 아동학대에는 신체적인 학대와 방임, 성적학
대,
정서적 학대와 방임 등을 포함시켰으며, 가정외 아동학대는 아동을 위한 시설이나 학교에서
의
학대와 방임, 아동의 노동력 착취, 미성년자 매춘, 강간 기타 성적학대를 포함시켰다.
Halperin은
9가지로 나누어 신체적인 학대나 성적학대, 신체적인 태만, 의료적 태만, 정서적 태만, 교육
적 태만,
아동유기, 복합적 영역 등 9개로 나누었는데 현시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비교적 명확한 신
체적인
학대나 성적학대, 아동유기 등에 우선 중점을 두고 앞으로 의료적 태만, 교육적 태만, 정서
적 학대와
태만등의 방면으로 점차 확대시키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체벌과 훈육 그리고 아동학대의 구분으로 가정
내에서
부모가 아동을 구타할 때 이는 항상 '사랑의 매' '교육의 매'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행해지
고
있으며 실제로 이를 학대라고 규정하기 어려운 때가 많다. 아동 자신도 웬만한 체벌은 당연
한
것으로 여기며 부모는 이를 당연시하고 빈번하게 행하는데 우리나라 부모들 중 72%가 아이
들에게
체벌을 사용하는데 비해 일본은 33%, 미국은 26%로 나타났다. (한국 꺾핍조사 1980) 우리
나라
아동의 92~98%가 매를 맞아 본 적이 있고(신영희 1986, 김광일 1987) 아동의 훈육 방법으
로
우리나라 부모들이 체벌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오히려 체벌을 사용하지
않으면
아이들이 버릇이 없어지고 교육상 좋지 않다는 관념까지 팽배해 있으므로 심각한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써 전문가들은 체벌의 위험성과 비교 육성
에 관해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특히 구타와 기타 아동학대의 후유증, 성격발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연구 발표

함으로써 부모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최근 이영희 등 (1992) 이 전문가들

에게 구체적 학대행위에 대한 심각성을 평가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 같은 구체적 학대

행위에 대해 일반 부모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실제 일반인들의 학대에 대한 의식도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홍보 가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가정내의 학대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나 시설에 있어서의 아동학대에 관하여서도 불분명할 때가

있는데 최근 학부모들이 학생을 구타한 교사를 상대로 법적 소송을 제기한 예도 많이 있었으나 거의

예외없이 패소하였고 교사들에 의한 학생구타가 교육적인 상황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체벌, 교육을

위한 사랑의 회초리로 규정되고 교사들의 구타행위가 옹호되고 있다. 이러한 태도가 계속되는 한

학교나 아동보호 시설에서의 아동구타는 계속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공공연히 시행되고 있는 체벌이 어디까지가 교육적이고 훈육적이며 아동의 발달을 도와주는 지, 아니면

방해하는지를 구분짓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아무리 교육적이고 훈육적으로 매를 들었다

해도 그 정도와빈도가 심각하다면 이는 학대로 봐야 할 것이고 또 그 결과가 엄청난 신체적 손상을

입혔다면 구타의 의도와 관계없이 아동학대로 봐야 할 것이다.

이것은 특히 학교 교사들의 구타에 엄격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김광일, 고복자(1987)의

보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훈육을 위하여 때리는 부위는 손등이나 종아리, 궁둥이 같은 부위인데 심한

아동구타는 얼굴, 머리 온몸 등 맞는 부위가 다름을 보였다. 학교나 집에서 행해지는 체벌이 진정

훈육과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때리는 부모나 교사의 감정 통제가 선행되어야 하며 체벌을 선택할 때도

신체적인 손상을 초래하지 않는 방법을 택하여야 할 것이며 교육적 체벌과 학대의 구별, 올바른 훈육

방법에 관한 연구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아동학대를 취급하고 있는 전문가의 입장에서조차 학대의 범위를 규정짓기 힘든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만 의존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도 아동학대의 진위 여부와

그 심각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학대심의기구'가 창설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 심의기구는 아동 전문가뿐 아니라 학부모, 경찰, 보사부 관계자 등으로 구성하고 각 지역마다 학대 신고가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동학대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논란에 관하여 Doek(1989)의 조언을 소개하면 "...그러나 한국에서 아동학대의 개념과 정의를 위하여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같은 토론은 학대와 훈육, 방임과 무지 사이에 어떤 선을 긋느냐의 논점에 주저앉고 말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학대의 정의와 유형에 관한 논란에 매이기보다 학대의 대책과 예방의 개발에 정진하도록 촉구한다.

학대의 빈도

학대의 정의와 종류를 정하기가 힘든 만큼, 학대에 빈도를 조사하는 것은 그리 쉬운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아동구타와 분명한 성적학대에 국한해 온 듯한데 이것은 초기 아동학대 연구로서는 당연하고 현명한 접근방법으로 보이며, 앞으로는 '분명한 학대의 종류'를 확대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리라고 본다. 신체적 학대의 가장 명확한 형태로 볼 수 있는 아동구타의 발생률은 일반에 있어서 18%가 매주 1번 이상 부모에게 매를 맞으며 (십자군 연맹 1987년), 8.2%가 매년 12회 이상 심각한 매를 맞고(김광일·고복자 1987), 가장 최근 허남순(1992)에 의하면 우리나라 아동의 81.5%가 구타를 경험한 바 있고 그중 3%가 매우 심하게 구타를 당했다고 한다. 또한 이제까지 보사부 통계에 의하면 연간 13,000명씩 학대당하고 있고 (이배근 1989), 이러한 현상은 일본과 우리나라의 특이한 현상으로 보인다. 이는 아동구타가 형법에 범죄행위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일어나는 특이한 아동방임으로 보여진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성적학대에 관한 관심과 보고가 매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유교적인 전통하에서 성적학대는 좀더 뉴스 가치가 있고 매우 충격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인 듯한데 정동철(1989)의 보고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5.4%가 본인이 원하진 않는 상태에서 성적인

접촉을

하였고 강간의 경우가 6.05%, 따라서 성적 폭력을 당한 것이 11.5%로 나타났다. 이 중 73.6%가 고등

학교 이전에 일어났으며 국민학교 이전에 성폭행을 당한 것이 21.3%로 나타났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가해자의 70~80%가 피해자가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점이다. 이종복(1991)의 보고에 의하면 청소년의

상당수가 성학대(13%)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중 12.3%가 국민학교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때가 65.8%라고 보고한 바 있다. <성폭력상담소>의 최근 보고(1991)에 의하면 전체 성폭행 418건 중

123건이 어린이에 대한 것으로 전체 성폭행의 29%에 달했다. 또한 상담 사례 중 근친에 의한 성폭행이

17.5%에 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 여기에 청소년을 포함시킨다면 백분율은 훨씬 증가하여

피해자의 반에 달하고 있다.

심명희의 '공범위한 성폭행 실태조사 연구'(1989)에 의하면 어린이에 대한 성추행이 6.5%에 이르고

중요한 것은 이들 중 0.7%만이 신고되었다는 것이다. 신고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로는 가해자의

70~80%가 아는 사람이었는데 이것이 가장 큰 신고 기피사유였다.

아동학대의 원인(피해자, 가해자 가족에 관한 연구)

그 동안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아동학대에 관한 연구는 주로 그 발생 빈도에 관한 역사적 조사인

경향이 있고 정작 아동학대의 원인을 이해하려는 연구는 그리 많지 않았다. 권은주(1977)가 '아동

학대의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고찰'로서 신체적인 것을 중심으로 보고한 바 있고, 신영화(1986)의

'한국 아동학대의 사회인구학적·가정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소속희(1986)가 학대하는

어머니들은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생활변화를 더 많이 겪고 있으며, 따라서 이로 인한 스트레스의

정도가 높음을 보고한 바 있다. 김광일·고복자(1987), 안동현·홍강의(1987)는 역사적 조사에서

아동과 부모의 특성 및 사회경제학적 형태를 기술함으로써 간접적으로 피해아동과 가해자의 특성들을

제시한바 있다. 최근에 이소희(1989)가 아동학대를 확인할 수 있는 아동학대 척도를 개발하였고

김연미(1990)가 일반인들에게 있어서 학대에 대한 인식을 연구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부유층 가정의 빈곤층 가정보다 아내구타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친부모와 같이 사는 아동보다는 계부, 계모 혹은 양부모와 같이 사는 아동이 심하게 때맞는 경향이 있었고, 아버지가 무직이거나 직업이 있는 어머니의 아동, 부모의 직업이 노동일 경우 심한 구타를 받는 경향이 많았으며 구타자는 어머니, 아버지, 형제의 순이었다. (김광일·고복자 1987) 그러나 주영희(1984)의 보고에서는 거출연행우아 학대경험은 주로 아버지가 가해자로 나타났다. 안동현·홍강의(1987)의 보고에 의하면 구타에 의한 손상을 입은 아동의 평균연령은 4.9세이면 가벼운 손상이 7.3세로, 특별 힘찬 손상은 나서부터 만2세까지 가장 높았고 가벼운 손상은 5~6세나 10세에서 많았다.따라서 유아기 구타와 아동기 구타는 질적으로 다른 것으로 보이며 후유증에도 큰 차이가 있었다. 0~2세 사이의 유아기 아동학대는 부모가 아동에 대한 애정과 애착형성에 실패했기 때문인 듯하고 5~6세에 높은빈도를 보이는 것은 훈육을 위한 체벌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안동현·홍강의 1987년)

원인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동의 특성과 가해자의 특성 외에 가족상황화 역동, 사회·문화적 특성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야겠다. (양옥정 1992) 외국 문헌에 의하면 아동구타가 미숙아 라던가 선천성 기형아라든가, 조산아, 원하지 않는 아동들에 많고 또한 이런 아동들의 특성은 자주 보채고 부모가 귀여워할 수 있는 면이 부족하며 이에 대하여 가해자 부모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경우가 많다.

학대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부모가 특정한 정신문제를 가진 경우는 드물고 공통적으로 글들 자신이 어린시절에 학대를 받은 과거가 있고 자녀양육과 훈육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 이외에 다른 방법을 잘 알지 못하며 그들 대부분은 아이들을 돌보는 능력과 경험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학대부모들은 미숙하고, 정서적인 지지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고, 또한 부부관계에서의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 (곽영순·홍강의 1987)

가해자들의 이러한 특성은 피학대 아동과 가해부모 혹은 가해자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관한 시사점이 된다 하겠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학대에 관한 단순한 빈도조사보다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 그리고 그들의 관계, 가족역등 및 사회적인 여건을 좀더 심층적으로 연구하여야겠다. 또한 우리나라의 특이한 아동학대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아동유기에 관하여는 유기의 원인, 유기한 부모들의 특성에 관한 연구가 매우 어렵지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학대의 후유증에 관한 연구

외국 문헌들에서 학대의 후유증에 관한 많은 연구를 찾아볼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 잇들의 보고에 의하면 부모 구타로 인한 사망이 6차례나 되었고, 두개골 골절, 복강 및 뇌출혈 기타 골절이나 전신의 상처 등 심한 경우가 1년 43건이나 되었다고 한다. (안동현·홍강의 1987) 최근 허남순(1992)의 보고에서도 골절이 0.8%, 불구가 된 것이 0.3%, 화상 0.3%, 그리고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일이 자주 있는 경우가 0.5%였다. 성적학대는 그 후유증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보다는 심리적, 정신적 발달에 영향을 줌으로써 청소년기나 성인기에 이르러 그 후유증이 심각해 짐을 알수 있는데 신문보도나 증례연구에 그치고 이에 대한 체계적 연구가 국내에서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학대의 발결과 치료 개입

우리나라의 현행 제도에에서는 아동학대를 금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다.(아동복지법 18조의 1호부터 11호까지 그리고 미성년자 보호법, 근로 기준법, 형법 등) 아동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아동학대 행위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이들을 발견한 사람, 혹은 학대받은 아동아동 자신들이 어떻게 신고하고 어떤 절차를 거쳐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가해자인 부모는 물론 신고를 기피할 것이고, 가해자 아닌 가정내의 다른 사람은 가족내 역동 때문에 신고를 기피하거나 오히려 은영중 학대에 동조할 수도있다. 이웃이나 친척들이 발견하였을 때 보복이 두려워

아동학대를

보고하는데는 많이 주저하고 고민하게 된다. 또한 그 학대의 상처로 인하여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의사들이 학대에 대해 조금만 이해하더라도 학대아동은 쉽게 발견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간과하기가 쉽고, 학대가 의심이 되더라도 이를 어디에 어떻게 신고해야 할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도덕적, 법적인 의무가 명시되지 않아 보고할 생각을 안함은 물론 신고나 치료의 개입이 복잡하고

귀찮아 오히려 이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신고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미국의

경우, 일반인이나 혹은 전문인 중 누구든 아동학대를 발견하였을 때는 이를 아동보호서비스에 반드시

보고할 법적인 의무를 부과하였다. 따라서 분명히 아동학대를 확인하였는데 보고하지 않을 경우,

전문가나 그 아동학대를 본 사람에게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게 되어 있다. 이러한 법은 주로 미국과

호주, 캐나다등에서 행해지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Doek,1988) 신고의

의무화는 아동학대의 발견을 도와줄지는 모르나, 이것이 학대에 대한 치료개입과 예방 등 후속절차가 따라주지 않는 서비스 체제하에서는 무의미할 것이다. 유럽의.유럽의 경우, 법적으로

신고를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비밀 의사위원회라'는 민간협의기구를 통하여 의사와 사회사업가,

기타 전문가들이 학대가해자를 범죄자로 취급하기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로 보고 이를

경찰이나 정부 당국에 누설하지 않고 비밀을 유지하면서 도와주는 체도를 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이냐는 아동복지가들이나 법률가 등의 조사연구와 토론이

필요하다. 실제 우리나라 상황에 있어서 법적인 뒷받침이 없으면 신고를 안할 경우가 많고, 또

하더라도 이에 대한 치료적 개입이 민간단체 주도만으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고를 의무화한

미국에 경험한 바로는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으나 학대가 아니라고 판정이 되었을 경우, 신고자가

잘못 신고한 것에 대한 부담이나 법적조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에 대한 어떤 형태의 보복도 없는 것을 보장해줘야 될것 으로 보인다. 그동안 경험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신고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지만 신고는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성

학대의

경우 더욱 그렇다. 구타의 경우 지난 6년간 아동상담소에서 57건, 방임이 22건밖에 신고되지 않았으나(이영희, 1992) 성적학대의 경우는 성폭력상담소에 6개월간 400여명이 신고한 것으로

보아(나눔터, 1992) 아동학대와 성적학대에 대한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신고 건수는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견하였을 때 상담소나 아동전문가들, 의사들이 어떠한 조치를 하여야

될 것이냐가 막연해지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아동보호서비스(Child Protection Service)'가 아동학대를 전담하기 때문에 신고만 하게 되면 '아동보호서비스'가 치료적 개입과 후속조치를 즉각

도맡아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를 받아서 이를 어떻게 처리하며 누가 책임을 지는가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경찰에 이웃 아동이 심하게 자주 구타당하는 것을 신고

하였을 때 경찰에서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신고받은 관계당국자가 아동구타나 학대를 신고받았을

때 반드시 조사를 시행하여야 된다는 의무 조항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정내의 분위기 문제를

간섭할 수 없다는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학대에 대한 서비스를 하려는 아동

복지 전문가나 의사들도 후속조처에 대하여 심한 무력감을 느끼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권위주의

적이고 체벌이 정당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는 문화적 상황에서 신고 의무화와 후속조처로써 어떤

개입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세부지침, 그리고 책임부서의 명기가 없는 한 치료적 개입이 매우 어렵게

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전문가에게 아동학대가 분명한 아동은 일시적으로 부모로부터 격리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가 주어지고, 치료적 개입을 전담하는 아동보호 체제와 법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아동복지 전문가 등이 신고를 받았을 때 동시에 경찰이나 기타 정부기관요원의 협조로

부모를 방문하여 필요한 조치와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적 아동보호서비스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현행 우리나라 법규에서 아동복지법(18조)에 아동학대와 아동착취에 대한 금지조항, 조사에

관한

조항(19조)이 있지만 이러한 것이 일어날 때 어떠한 조치를 취하는가에 대한 시행 세칙 등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 다만 학대에 대한 벌칙(34조)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되어 있어

그 실효성이 의심스러우며 이와 관련하여 시행 세칙의 세분화와 법제화가 필요하다. 특히 학대를 받는

아동이 경제적으로 불우한 계층이거나 또는 부모가 그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에 대한

무료 서비스나 혹은 그 비용을 담당할 수 있는 특별재원의 마련과 치료개입에 대한 책임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아무리 발견되어도 속수무책일 가능서이 많다. 또한 심한 아동학대와 성적학대의 경우 아동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부모로부터 격리 수용되어야 할 경우 이들을 위한 시설과 그 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논란을 감안하여 아동복지 전문가들은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아동학대 개입체제를 정부와 협동을 개발해야 할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다.

아동학대와 예방

학대에 대한 정의와 유형의 문제성, 학대신고 제도의 부재, 신고 후 후속조치, 치료적 개입의 어려움

에도 우리나라에서 아동관련 전문가들이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는 학대의 예방 활동이다.

전문가 특히 일선에서 아동을 다루는 의사, 교육자, 시설종사자, 사회사업가 등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일반대중이 학대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대중매체와 강연을 통한 홍보

사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홍강의, 1987) <아동학대예방협회>가 1989년에 결성된 후 매년 2회의 세미나를

통해 관련 전문가뿐 아니라 대중교육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최근 유행하는 신부교실, 예비부모교실,

부모교육, 주부대학에서 학대예방을 위한 자녀교육의 방법, 자녀의 행동관리 방법 등에 관한 강의나 워크숍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맞벌이 부부나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양질의 탁아소, 유아원이 충분히 개설되고(변화순, 1989)

이 같은 학령전 아동교육기관의 교사들이 부모지도와 상담을 할 수 있고 학대 위험성이 높은 아동을 특별지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자질을 길러야 한다. 미숙아, 기형아, 원하지 않은 아이, 미혼모, 10대 임신모 등에 대한 적절한 추적 서비스와 가정봉사원제도 등 정책적인 배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양옥경, 1992) 우리나라에 비교적 특유한 방임 형태로 볼 수 있는 기아발생의 예방으로 이배근(1987)은 결손, 빈곤 가정에 대한 정책적 차원 또는 민간단체에 의한 경제적 지원과 적극적 개입, 사회복지관의 역할 확대, 위탁가정제도의 확대, 탁아제도의 개선, 미혼모 발생 예방 등을 천거한 바있다. 끝으로 아동학대는 가정폭력의 일환이므로 부부불화와 가족문제의 치료와 예방, 가족기능의 강화 등 핵가족의 붕괴와 문제성의 예방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결 론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에도 아동학대, 성학대, 아동방임 그리고 아동유기 등이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심각성도 외국에 못지 않으며, 앞으로도 더 증가될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그 치료, 치료적 개입에 고나심을 가지고있는 민간단체의 주도로 이에 대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학대신고와 대책에 대한 법적인 시행체적이 결여되어 있고 또 실제 아동학대가 발견되었을 때 이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인 조처 방안과 선택의 여지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은 당황하고 좌절하고 있다. 또한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 인식은 매우 저조하며, 이에 대한 저항감과 학대와 훈육, 교육의 구분이 불분명하며 아동학대 예방과 조처에 큰 방해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법규상 또는 정책적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야할 시기다. 한편 예방책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일반인, 특히 부모들의 인식을 높이고 체벌에 의존하지 않고 아동의 행동을 통제하고 성격형성을 도와주는 행동과학에 기반을 둔 양육방법을 개발하고 교육하는 노력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아동구타와 성적학대는 당장의 상처나 생사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학대받은 아동이 커서

성격적으로,
행동적으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갖기 때문에 그 예방과 조치는 본인들을 위해서는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장래발전을 위해 꼭 성취해야 할 복지활동이라 하겠다.